

* 등 록 번 호 : 20220202

* 최초 등록일 : 20220314



dleogks1015@naver.com

* 최종 등록일 : 20241118

한성막희집 정 보 공 개 서

한성막희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한성막희집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96

[대표 팩스번호]

[대표 전화번호] 041-566-622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한성유통			
사용 브랜드	주 소			
한성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96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4.06.24	이대한	041-566-6223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12-32-649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성막힛집	한성막힛집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정받는 전문점입니다.
상 호	 한성막힛집 _____점	
상표/서비스표	 한성막힛집	상표 출원번호 및 일자 40-2022-0020755(2022.02.03.) 상표 등록번호 및 일자 (등록진행중)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0	0	0	567,589	0	0
2022년	0	0	0	1,336,356	0	0
2023년	694,656	215,951	478,704	1,806,211	131,436	135,47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매출액 등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아, 상기 가. 표의 매출액 중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과 직영점의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대한	대표	2014.06.24.~현재	한성막힛집/ 대표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한성막힛집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or 등록 여부(일자)	출원번호 or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한성막힛집	가맹점 운영	출원일자 (2022.02.03.) 등록일자 (2023.09.11.)	출원번호 (40-2022-0020755) 등록번호 (40-2081-3270000)	이대한	(2033.09.11.)

-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한성막힛집] 가맹사업 현황

1. 당사의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2.04.05
당사의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06.24

2. 당사의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성힛집		이대한	2022.04.05.~현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96

3.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성막힛집	기타외식	회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성막힛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 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	-	1	10	9	1	11	10	1
서 울	-	-	-	0	0	0	0	0	0
부 산	-	-	-	0	0	0	0	0	0
대 구	-	-	-	0	0	0	0	0	0
인 천	-	-	-	0	0	0	2	2	0
광 주	-	-	-	0	0	0	0	0	0
대 전	-	-	-	0	0	0	0	0	0
울 산	-	-	-	0	0	0	0	0	0
세 종	-	-	-	0	0	0	0	0	0
경 기	-	-	-	0	0	0	0	0	0
강 원	-	-	-	0	0	0	0	0	0
충 북	-	-	-	0	0	0	0	0	0
충 남	1	-	1	10	9	1	9	8	1
전 북	-	-	-	0	0	0	0	0	0
전 남	-	-	-	0	0	0	0	0	0
경 북	-	-	-	0	0	0	0	0	0
경 남	-	-	-	0	0	0	0	0	0
제 주	-	-	-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한성막힛집]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0	10	0	1	0	9
2023	9	2	0	1	0	10

6. [한성막힛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한성막힛집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1						
서울	0						
부산	0						
대구	0						
인천	2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0						
강원	0						
충북	0						
충남	9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배달 등 매출액에 어떠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기 표에 매출액을 기재하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구두상 매출액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매출자료이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 [한성마케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성마케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51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한성마케팅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판촉	소계	-	480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	우리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	041-569-6014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입금 내역은 당사로 등록정보가 전달됩니다.



귀하는 예치 후 예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성마케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초도 상품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간판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초도 물품비용은 개시 이후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제외함.]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최초 가맹비	10,000	계약 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 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5,000	"	"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2. 영업이 개시되거나 서 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 교육비는 최 초교육 및 가맹 계약기간 중 운 영교육을 포함하 는 금액임(교육 시 재료비 포함)
합계	15,000				

나.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채무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 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 해배상금을 제외하 고 반환	1. 계약종료 시 잔존채무액 을 공제 후 상호, 서비스표 등 당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별도의 이자가 없음 3. 물류선입금 제도 : 물품 구입은 선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문 가능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10,000
최초 교육비	5,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합계	17,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33m ² 변경 기준 (30평)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86,000	2,866			
간판, 사인물	별첨참조	4,000	133	계약금: 계약 시	설치 전 계약취소	간판1개소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60,000	2,000	잔금: 점포오픈 전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외장,철거, 전기증설, 1차설비, 냉난방, 의탁자 별도
주방기기 (설비)		15,000	500		설치 전 계약취소	가맹점 매장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족관이 포함된 금액
주방집기 (의탁자,비품 등)		5,000	166		설치 및 공급 전 계약취소 가맹점 매장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도물품		2,000	66		공급 전 계약취소

※ 인테리어(내장공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명성과 통일성을 물론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금액은 매장실측 및 본사,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상품비용(초도물품비)은 가맹점 오픈 시 발주 상품 약 2일 분에 대한 비용으로서 가맹점 상황과 예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권은 특수상권 측 시공기준 적용 시 전체 투자비가 30%~40%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설비, 정착물에는 <전기승압, 철거공사, 덕트입상, 소방공사, 전기온수기, 도시가스, 화장실, 외부샤시, 가설칸막이, 자동문, 바닥콘크리트타설, 우드블라인드, 냉난방기, 상하수도 인입, 파사드, 자동판매기의 월 이용료 또는 렌탈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비용이 부담되며, 야간공사 진행여부, 특수상권 입점 시 특수상권 공사 기준, 면적의 증감 및 시장상황과 인테리어 컨셉의 변화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인테리어 컨셉 제공, 컨설팅 및 검수비로 3.3㎡ 당 [22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및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본부의 승인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

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조언할 뿐이며, 이는 해당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의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교육 및 필요시 서비스 보수교육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식품위생법 제 40 조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종사시켜서는 안됨
종업원	필요시 입문 및 서비스 보수 교육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와 같은 설비 등 전문품은 외부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구입이 어렵고, 구입하더라도 전문적인 시공 및 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및 A/S 문제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와 협의하여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가맹점 월 카드등매출액의 2.2%	매월 점포개설일과 같은 날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영업표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서 소멸성임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및 혜택부여 등에 따라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가맹점 월 카드등매출액의 0.5%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월단위 입금으로 반환 없음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해당 가맹점 사업자	행사별 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사전 통지	교육 실시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정)	교체실비	간판 등 변경 이전	제작 또는 변경 후 반환 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정)	실비	변경 이전		제작 또는 변경 후 반환 안됨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사업체(미지정)	실비	교체 보수 이전		교체 또는 보수 후 반환 안됨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당사 물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 감면하여 주는 혜택)부여 등으로 로열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드 등 매출액은 가맹점 월 총 매출액에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단순 현금매출액(현금영수증 처리된 금액을 뺀 금액임)만을 제외한 금액으로 카드 매출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처리된 현금매출액(지역화폐 및 상품권 포함)과 각종 페이 등 간편 결제 및 전자결제, 배달 매출액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가맹점 운영 중 원칙적으로 받

지 아니하고 특별교육에 한하여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분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 시 부담분의 일부를 가맹점 (판촉)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부담
브랜드 및 상품	50%	50%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50%	50%
가맹점모집광고	100%	0%

물품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 및 발주시스템 상 각 가맹점의 물품발주는 가상계좌 입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상계좌에 발주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미입금 또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로열티와 광고비 등이 함께 청구된 경우를 포함) 발주시스템 상 물품에 대한 주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액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 차단 및 계약 갱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배달 등 일체의 매출액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가맹점 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QSC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 상태를 조사	필요시	

라.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 지위에 따른 책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며,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통제를 받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맹본부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의로 영업으로 영업을 하는 법률상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점 영업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 사용자와 피용자,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로열티와 광고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 공급에 따른 미납과 연체 등에 의한 발주차단,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의 갱신거절과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경합되

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8.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비용	비고
가맹비	10,000	일반 양도양수 시 면제
교육비	5,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미불금을 즉시 지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제 7 조 [계약의 종료 및 원상복구]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한성마케팅』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한성마케팅』에 관한 영업표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당 1,5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매장면적(m²)X지체일수X1,500원]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하여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한

다. 이 경우에도 철거 및 원상회복 완료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

- ⑤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한성막힛집』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와 소유물들은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날부터 7일 내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미수금을 납입하고,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반환됩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마. 가맹계약 10 년의 기간만료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 10 년의 기간 만료 시 가맹계약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맹본부는 노후되었거나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가맹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매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부진, 인근에 경쟁업체의 진입 또는 동일 영업지역 내 상권 및 입지변경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위와 같은 문제가 없고 노후되었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소한 경우 가맹본부는 만료 시점에 운용 중인 현 가맹계약 조건(해당 시점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기재 내용)으로 1 년씩 재계약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명성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물품사용은 고객의 건강과 안전, 가맹본부와 브랜드의 명성 유지, 상품과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적절한 품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사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 준수와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갱신(재계약) 거절, 계약의 해지 등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 및 경영환경의 변화와 신메뉴 개발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이 변동되거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으로 교체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와** **힛** **집**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성막힛집]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우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명성과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상품 제한내용 및 조건]

취급상품 제한/위반 시 책임

제 21 조 [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

- ①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의 조리방법, 상품종류, 판매방법 등에 대하여 『한성막힛집』의 이미지 및 맛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매뉴얼이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한성막힛집』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메뉴와 다른 상품이나 메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단,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메뉴나 조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메뉴	완도막회	왼쪽에 기재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기재된 제품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회추가			
	야채무침			
	계란찜			
	순두부찌개			
	새우튀김			
	고등어구이			
	날치알밥			
	낙지볶음			
	유린기			
	돈까스			
	슬러쉬물회			
	해장라면			
	칼국수			
	물회국수			
	회덮밥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만 19세미만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과 권장판매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구분	메뉴	가격	온, 오프라인 (개별 매장,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사전 통지	2021년 3월 기준
	완도막회	41000~64000		
	회추가	16,000		
	야채무침	5,000		
	계란찜	5,000		
	순두부찌개	4,000		
	새우튀김	15,000		
	고등어구이	15,000		
	날치알밥	6,000		
	낙지볶음	23,000		
	유린기	12,000		
	어린이돈까스	7,000		
	슬러쉬물회	23,000		
	해장라면	4,000		
	칼국수	6,000		
	물회국수	12,000		
	회덮밥	12,000		
	초밥추가	2,000		
	매운탕	10,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확인서의 내용과 표시에 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영업지역확인서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절대적 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인 경우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회 전문점	한성마케팅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계약매장에서 반경 500m 를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 영업지역을 표시함(단, 경계선을 불포함하며 표시 안쪽 지역임). 지도별점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름 * 특수상권은 영업지역확인서 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 지역임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배달 등 매출액에 일체의 관여를 하고있지 아니하여, 가맹점 비율을 산정할 수 없으나, 자사온라인몰, 기타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과 기타 오프라인의 합의 비중이 기재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2] 년이며, 이후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 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부터 [1] 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확인서 상 계약기간 란에 기재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계약 갱신 시 이행 사항	관련 계약조문
제 5 조 [계약기간]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 시 다음 각 호를 계약갱신일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2. 계약갱신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조 5항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5조 2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5조 2항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3호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5조 2항 3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조 2항 3호



라. 물품공급 중단 사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물품 공급 중단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 23 조 [상품공급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또는 수발주 창으로 예고한 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 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상품·자재 등의 대금지급을 연체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나 지침을 2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가맹본부가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 의해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대금지급을 요청받고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의 조리방법, 판매상품의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23조 1항

마.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제 6 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계약기간] 제5항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 6조의 2[영업중단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 6조의 3[간판등 영업표지의 제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 . 시정요구권] 각 항을 위반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제17조[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3조[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12.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 6 조 [계약의 해지] ②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6조 2항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바.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변경	관련 계약조문
이 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쌍방의 서면 합의(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제 33 조 [계약의 변경]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사. 특수상권 입점에 따른 유의사항

특수상권은 로드상권과 달리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특수상권 내 가맹점 입점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상권 내에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다만, 특수상권의 입점을 위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특수상권 임대인에 의해 특수상권 내 가맹점의 입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명의로 특수상권 임대인으로서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상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또는 합의에 의해 가맹본부의 명의로 특수상권 임대차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독립된 지위에서 특수상권 임대인과 임대차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과 수익, 점포 운영 등 특수상권 내 가맹점 입점 및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는 특수상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가맹본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특수상권 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특수상권 내에 입점을 요청하고, 실제운영을 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임차인의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특수상권 임대차계약상의 모든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수상권에 입점을 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 내 가맹점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과의 기본 계약 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가맹점사업자는 특수상권 내 매장 운영권 양도, 담보 제공 등 그 용어에 상관없이 매장 운영과 관련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특수상권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금지됩니다.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목 또는 나무를 위반하여 특수상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특수상권 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거절 또는 해지, 종료될 경우 계약거절 또는 매장운영 및 영업의 종료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없고, 특수상권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자동종료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맹점의 철거, 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수희망자가 신용도 등의 문제로 가맹본부인의 명성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나 양수희망자가 영업을 양수할 경우 계약이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양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업양도에 대하여 승인을 거절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희망자는 거절이 통보된 때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거절사유에 대하여 소명 및 검증함으로써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가맹점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합니다.

양도 승인 조건	관련 계약조문
제 17 조 [영업양도 등] ⑦ 양도에 대한 승인 : 가맹본부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1. 양도인이 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제출한 경우 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가맹본부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 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이 부합한 경우 5. 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이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가 있을 경우, 변경	제 17 조 [영업양도 등]

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로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 6.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에 준하여 제28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 7. 영업양수인이 제6항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모두 납입한 경우	한성 의 유흥 유흥
--	-------------------------------------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한성유흥유흥]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한성유흥유흥과 동종 또는 동일시 될 수 있는 회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가맹본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도 가맹계약서 제 28 조 제 4 항에 따른 위약벌이 부담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외식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시 ~ 24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포를 개장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휴업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문의 :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 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또는 담당 수퍼바이저)에 통지하시고, 휴업일로부터 3 일전에 이를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구두 제공합니다.
그 밖에 귀하에게 영업장 관리·감독에 관한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준수사항
제 12 조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① 가맹점사업자는 『한성막힛집』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이 유지되도록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포한 운영매뉴얼이 가맹본부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에 항상 매뉴얼 사본을 최신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매뉴얼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 원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가맹본부는 『한성막힛집』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의 유지, 소비자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활성화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원(슈퍼바이저)을 파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에 대해 영업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슈퍼바이저)이 자유로이 점포에 출입하고 영업상태를 원활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원 . 부재료관리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점포의 운영을 점검하기 이전에 미리 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운영점검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하며 그 결과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37 조 (기타 특약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해충방역서비스 및 화재보험, 영업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맹점에 가맹계약을 함께 체결한 자가 2인 이상(동업 등)인 경우 가맹본부는 명의자 중 1인과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 및 이행함으로써 모든 의무와 책임을 면하고, 다른 명의자는 이를 이유로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

당사는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점포 내 위생 및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해충방역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기업광고와 '제품 등'광고 등을 총괄하며, 경영적 판단과 결정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 행사의 시행, 비용 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 점부담액 제시(명 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판촉비의 100%	광고· 판촉비의 0%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 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 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 품의 할인비용이 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팸플 렛, 전단 등의 홍보 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 사 시작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가맹본부는 가맹점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이 고려하고 있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조언 등을 행할 뿐이며, 실시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종 결정에 의함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상기 분담절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다만, 분담 비율은 가맹본부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국 및 지역광고/판촉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 및 통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하여 전국적인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광고 및 판매촉진의 내용, 소재, 횟수, 시기, 매체, 방법, 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전국규모 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의 경우)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지역단위 광고의 경우해당지역의 가맹점사업자측이 비용을 부담한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담금이나 소요비용을 명세서에 첨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납부기간 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 지역 내에서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광고/판촉활동

제 16 조 [광고 및 판매촉진 등]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 활동”을 지시 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판촉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내용, 형식, 소재, 계획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가맹점별 개별 판촉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판촉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성**  **회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제 28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 ①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제시,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가맹본부가 작성한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고유의 레시피 등 점포 운영 매뉴얼을 이용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 가맹본부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의 종료 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원(₩30,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형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위약벌이 부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제 6 조 [계약의 해지]

-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 : 일금 일백만원(W1,000,000) X 4개월(단, 4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제 28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누설금지 및 경업금지의무]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계약기간 내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 삼천만원(W30,000,000 원)을 위약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 조 [손해배상]

- ①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별 규정 이외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신한은행  한정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 부담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1(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간판, 별도공사 등 제외)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자율적 해결 원칙

분쟁 해결
<가맹계약서 제 36 조 [분쟁발생 시 재판의 관할]>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개업하기 이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개업 교육	30일이내(현장교육포함)	5,000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 하는 금액임 -조리실습비 포함
운영 교육	수시		
특별 교육	필요 시 산정	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최소시간이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가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당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 훈련	
제 10 조 [교육 및 훈련]	①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사안을 판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가맹본부가 정하는 최소 인원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와 교육 후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재교육 또는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충남	두정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봉정로 396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일)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500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원)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36,800,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의 POS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2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